

사전결정서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	
	주소		
결정내용			
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	[] 적합		[] 부적합
	부적합 사항 · · · · ·		
• 건축위원회심의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개발행위허가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하천점용허가		[]적합 []부적합 (사유:)	
• 그 밖의 사항			

결정 제 호

「건축법」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,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	
「건축법」 제10조 제8항	•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